

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[2007. 11. 2 조례 제258호]

개정 2008. 8. 6 조례 제 293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0. 10. 1 조례 제 353호
일부개정 2011. 1. 7 조례 제 368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2. 2. 24 조례 제 412호
(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2. 7. 13 조례 제 428호
일부개정 2013. 5. 16 조례 제 475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4. 11. 21 조례 제 553호
(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0. 12. 29 조례 제 955호
(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
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
(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증평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제2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 회계의 군세수입액(세외수입을 제외한다)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·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지방교부세법 등 국가·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.

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

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<개정 2010. 10. 1>
3.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및 우수학교육성 지원 사업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제4조(위원회)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 7. 13>

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 10. 1>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<개정 2018. 12. 28, 2020. 12. 29>

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, 자치행정과장, 행복돌봄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, 교육관련 전문가,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<개정 2008. 8. 6, 2010. 10. 1, 2011. 1. 7, 2012. 7. 13, 2013. 5. 16, 2018. 12. 28, 2020. 12. 29, 2022. 12. 29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2. 7. 13>

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1. 1. 7, 2012. 7. 13, 2013. 11. 8, 2018. 12. 28>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
2. 보조사업의 타당성

3.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

4. 보조금의 지원 규모

5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10. 10. 1>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록)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학교의 장(고등학교를 포함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1.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
2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
3.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

4.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
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1.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
2.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

3. 보조사업의 효과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

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
2.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3. 금액산정의 착오여부
4.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

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7. 13>

제11조(보조사업의 신고)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1.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
2.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
3.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
4.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

제12조(보조결정의 변경·취소)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1, 2012. 7. 13>

1.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
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
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

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수행 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. <개정 2012. 7. 13>

제13조(정산검사 및 감독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7. 13>

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7. 13>

제14조 삭제 <2022. 12. 29>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 11. 2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8. 6 조례 제293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⑲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정책기획실장”을 “기획실장”으로, “주민생활복지과장”을 “주민복지실장”로 한다.

⑳ 부터 ㉑ 까지 생략

부칙(2010. 10. 1 조례 제35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1. 7 조례 제368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교육지원담당”을 “인재육성담당”으로 한다.

부칙(2012. 2. 24 조례 제412호,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

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「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부터 ⑥0 까지 생략

부칙(2012. 7. 13 조례 제42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5. 16 조례 제475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복지실장, 미래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생략

부칙(2013. 11. 8 조례 제506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인재육성담당”을 “평생교육팀장”으로 한다.

⑩ 부터 ④5 까지 생략

부칙(2014. 11. 21 조례 제553호,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「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부터 ②⑥ 까지 생략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29 조례 제955호,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

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, 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